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8. 20.(목) / 총 4매
담당 부서	모빌리티정책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사무관 홍예표, 주무관 이수용 ·☎ (044) 201-3820, 3821
보도일시		8.20(목) 11:00시 이후 보도가능합니다.	

개인형 이동수단(PM)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

- PM 대여업 신설 및 보험가입, 주차 및 거치시설 도입
-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0일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(PM; Personal Mobility)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개인형 이동수단(PM)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」을 마련하고,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그간,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개정('20.6)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,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,
- 이번 방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M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,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.
-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첫째,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한다.

-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의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「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가칭)의 제정을 추진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.
-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,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·중·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.
- 중앙부처,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·관 협력 거버넌스*도 구성하여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,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.

*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(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), 민간(PM업계, 손해보험협회) 등

□ 둘째,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.

-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·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(안)을 연내에 마련하고, 관련 법규 등의 정비를 통해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.
- 철도역사·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,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.
- 또한, 현재 비거치식(dock-less)*으로 운영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.

*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시스템

- 다만, PM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제·개정과 주차/거치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셋째,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.

- 최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하여 등록제로 운영*하며,

* 운영계획 수립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대여업체는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등록 후 대여업을 운영

-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*하고 표준 대여약관**도 마련하여 고시한다.

* 현재는 대여업체가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임의로 보험 가입 중

** 사고보상 규정 명시, 개인정보보호, 고객 대응체계 구축 등

-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 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,

-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*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.

* 주말·법정공휴일에 중량 32kg, 각 변의 합이 158cm 이하인 접이식 상태로 탑재 가능

□ 마지막으로, PM의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.

- 개인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확산·독려할 예정이다.

- PM의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, 불법개조한 장치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,
 -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 상에 방치된 PM 및 관련 시설의 훼손 등 이용 중 불편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여,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.
-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“이번 방안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,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면서,
- “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 업계와 일반 이용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,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”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홍예표 사무관(☎ 044-201-38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